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덕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6개 부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여파와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제재처분의 감경사유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1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2. 22. ~ 4.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1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목 4)를 5)로 하며,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조(「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3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4조(「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표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
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
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가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
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
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5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마.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
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
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6조(「골재채취법 시행령」의 개정)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19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별표 1의4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골재채취중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허가취소(법 제31조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4개월의 골재채취중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별표 3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

저하계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7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

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

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

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

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

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가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8조(「내수면어업법 시행령」의 개정)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9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별표 6 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10조(「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법 제103조제4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11조(「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도지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이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별표 4 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법 제73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위반행위자는 제외한다)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12조(「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무역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나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13조(「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14조(「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15조(「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과태료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16조(「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11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영업정지 3개월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별표 6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

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22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별표 9 제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산림청장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나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17조(「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18조(「선박안전법 시행령」의 개정)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

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19조(「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이를 줄일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20조(「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21조(「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영업폐쇄(법 제17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0일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22조(「수산업법 시행령」의 개정)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23조(「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7 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24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줄일 수 없다”로 하고, 같은 목 3)을 4)로 하며,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다목3)을 4)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6조(「식품위생법 시행령」의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7조(「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28조(「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의 개정)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

저하계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29조(「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5)를 6)으로 하고, 같은 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0조(「어선법 시행령」의 개정) 어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이를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

저하계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별표 2 제1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31조(「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의 개정)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32조(「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33조(「어장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법 제3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자에 한정한다)가 「소상공

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나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34조(「어촌·어항법 시행령」의 개정)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35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며, 같은 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면허취소(법 제49조의15제1항제2호·제7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90일 이상의 사업정지로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정지처분을 가중하는 경우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면허취소(법 제49조의15제1항제2호·제7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60일의 사업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36조(「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7)을 (8)로 하고, 같은 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8)(중전의 (7)) 중 “(3)·(4) 및 (6)”을 “(3)·(4)·(6) 및 (7)”로 한다.

(7) 시장·군수·구청장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나목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감경기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6)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가)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나)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

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
인지 여부

별표 4 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37조(「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의 개정)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38조(「온천법 시행령」의 개정)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법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39조(「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다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를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줄일 수 없다”로 하고, 같은
목 4)를 5)로 하며,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
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0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위
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별표 3 I 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방송통신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
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제2호의 개별기준
에 따른 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가.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
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나.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
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별표 4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별표 5 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41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가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42조(「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나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43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나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44조(「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45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을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

저하계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별표 3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

저하계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46조(「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9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별표 4에 따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별표 6 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가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47조(「주택법 시행령」의 개정)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기간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말소(법 제8

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별표 5 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48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49조(「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50조(「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과태료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가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51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나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52조(「학교급식법 시행령」의 개정)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나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53조(「항공안전법 시행령」의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이를 줄일 수 있다. 다만, 가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별표 5 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54조(「항로표지법 시행령」의 개정)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55조(「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I 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관리청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II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이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가.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나.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별표 10 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56조(「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

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
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
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57조(「해사안전법 시행령」의 개정)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
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
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
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
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58조(「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해수
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별표 4 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59조(「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60조(「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가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61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9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나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
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
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 ② (생략) <u><신설></u>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u> 1. <u>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u> 2. <u>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u>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 ② (생략) <u><신설></u>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법 제103조제4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u> 1. <u>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u> 2. <u>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u>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2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 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② (생략) <u><신설></u>	제52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 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시·도지사는 고의 또는 중 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 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징금을 채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이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감 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 다.</u> <u>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 능력</u> <u>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 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 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u>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의9(등록취소 등의 기준) ①·② (생략) <u><신설></u>	제12조의9(등록취소 등의 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별표 4에 따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u> 1. <u>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u> 2. <u>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u>

〈 의안 소관 부서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연 락 처	(043) 719 - 1535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연 락 처	(044) 201 - 3226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연 락 처	(044) 203 - 2258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연 락 처	(044) 203 - 554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3460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연 락 처	(044) 200 - 5164

산업청 법무감사담당관실	
연 락 처	(042) 481 - 4283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연 락 처	(042) 481 - 49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바이오기술과	
연 락 처	(044) 202 - 6181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사업과	
연 락 처	(044) 205 - 3524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실	
연 락 처	(02) 2110 - 1324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연 락 처	(044) 205 - 7482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연 락 처	(044) 200 - 4465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연 락 처	(02) 2100 - 6262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6546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	
연 락 처	(032) 835 - 2771